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의 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」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이 우려되는 경찰청 소관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기 위하여,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」 서식 상 위반행위의 가중처분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일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시 위반행위의 처분 차수 적용기준과 차수 계산에 포함되는 행정처분의 기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」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없 음

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

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1 제1호다목 중 “행정처분의 기준은”을 “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 기준은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1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2조(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

개정)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7 비고 제2호 전단 중 “행정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”을 “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후단 중 “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”을 “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”으로 하며, 같은 비고 제2호의2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비고 제3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2) 3150 - 1192
경찰청 생활질서과	
연 락 처	(02) 3150 - 1396
	(02) 3150 - 1341